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 2쪽과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checkmark$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1. 기본사항

회계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①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명칭			② 조직형태	조직단위	☐ 기업 ☐ 사업장 ☐ 특정지역 ☐ 전국		
				조합형태	☐ 지부 ☐ 분회 ☐ 단위노동조합 ☐ 전국규모 산별 단위노동조합 ☐ 연합단체 ☐ 총연합단체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④ 소속 연합단체 및 소속 단위노동조합 명칭				
⑤ 대표자			⑥ 조합원 수				
⑦ 설립일			⑧ 전화번호				
⑨ 소재지			⑩ 전자우편주소				

2.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원)

구분	⑪ 자산 총계 (=⑫+⑬+⑭+⑮)	⑫ 현금 및 예금	⑬ 토지	⑭ 건물	⑮ 기타 자산	⑯ 부채
㉑ 총계 (=㉒+㉓+㉔+㉕)						
㉒ 일반회계						
㉓ 특별회계						
㉔ 보조금사업 회계						
㉕ 수익사업 회계						

3. 수입 현황

(단위: 원)

[illegible]

4. 지출 현황

(단위: 원)

[illegible]

5. 확인란

위 결산결과 정보는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산하조직의 규정 등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에서 의결된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에 관한 사항 등과 그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대표자:

확인일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결산결과를 위와 같이 공표합니다.

년 월 일

노동조합 명칭 또는 산하조직 명칭

작성방법

1. 기본사항

가. 회계연도는 작성 연도(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올리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가 아닌, 공표 대상이 되는 결산결과와 회계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적습니다.

* 공표 대상이 되는 결산결과와 회계연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작성 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는 회계연도의 종료일이 작성 연도의 직전 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를 말함.

나. “①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명칭”란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에 규정된 노동조합 명칭을 적습니다.

2) 지부·분회 등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하 “산하조직”이라 함)은 해당 산하조직의 규정 등(이하 “규정등”이라 함)에 규정된 산하조직 명칭을 적습니다.

다. “④ 소속 연합단체 및 소속 단위노동조합 명칭”란

1) 노동조합은 법 제11조제5호에 따라 규약에 규정된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연합단체를 모두 적습니다.

2) 산하조직은 소속된 단위노동조합의 명칭을 적고, 그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연합단체도 모두 함께 적습니다.

라. “⑥ 조합원 수”란

1) 작성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2) 다만, 작성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조합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신설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작성일(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올리는 날을 말함) 기준의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마. “⑦ 설립일”란 및 “⑨ 소재지”란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최근 신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기재된 노동조합 설립일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그대로 적습니다.

2. 자산 및 부채 현황

가. “⑪ 자산 ~ ⑮ 부채”란에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자산 및 부채가액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⑮ 일반회계”는 조합비, 상급단체로부터 받은 교부금, 하부조직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으로 운영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2) “㉠ 특별회계”는 정기에금 등 적립금 회계, 기금회계(예: 쟁의기금 등), 일반적인 조합비 외의 특별 조합비 등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3) “㉡ 보조금사업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회계를 말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도 포함됩니다. 이하 제3호사목에서 같습니다.

4) “㉢ 수익사업회계”는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수익사업의 회계를 말합니다.

나. “⑪ 자산”은 현금, 단기예금, 장기예금, 임차보증금, 토지, 건물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다. “⑫ 현금 및 예금”란에는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통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⑫ 현금 및 예금”란이 아닌 “⑮ 기타 자산”란에 적습니다).

라. “⑮ 기타 자산”란에는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기타 금융자산과 조합비 미수금,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⑫부터 ⑭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마. “⑮ 부채”는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합니다.

3. 수입현황(공표 대상이 되는 결산결과의 회계연도 1년 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가. “㉔ 전년도 이월금”란에는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의 현금 및 예금의 잔액을 적습니다.
- 나. “㉕ 조합비”란에는 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단위노동조합에 직접 납부한 조합비나 규정등에 따라 조합원이 산하조직에 직접 납부한 조합비를 적습니다.
- 다. “㉖ 상급단체 교부금”란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을 적고, 산하조직은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을 적습니다.
- 라. “㉗ 하부조직 부과금”란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산하조직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을 적고, 연합단체는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을 적습니다.
- ※ 부과금 등: 가맹비, 의무금 등을 말하며, 이하 제4호타목에서 같습니다.
- 마. “㉘ 후원금”란에는 조합원이 아닌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적습니다.
- 바. “㉙ 타회계 전입금”란에는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간의 전입으로 발생한 수입 금액을 적으며, “4. 지출현황”의 “㉚ 타회계 전출금”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사. “㉛ 보조금 수입”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 아. “㉜ 수익사업 수입”란에는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수익사업 수입 총액을 적습니다.
- 자. “㉝ 기타 수입”란에는 ㉕부터 ㉝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을 적습니다.

4. 지출현황(공표 대상이 되는 결산결과의 회계연도 1년 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지출은 그 성격에 따라 ㉞부터 ㉞까지 분류하여 적습니다.
- 나. “㉞ 일반관리비용”은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사무국 등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말하고, “㉞ 사업수행비용”은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 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 다. “㉞ 인건비”란에는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임직원 급여, 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인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 라. “㉞ 업무추진비”란에는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임직원의 직급·직책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업무 협의 등 대외적인 각종 행사 경비,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등 사무국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 마. “㉞ 기타운영비”란에는 “㉞ 인건비” 및 “㉞ 업무추진비” 외에 여비, 교통비, 통신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사무국 등의 조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 바. “㉞ 총회 등 대회비”란에는 규약 또는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등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
- 사. “㉞ 조직사업비”란에는 신규 조합원 가입,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의 신설·확대·변경 등의 조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
- 아. “㉞ 정책사업비”란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의제 개발, 제도개선 연구 등 노동조합의 정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
- 자. “㉞ 교육·홍보사업비”란에는 신규 조합원 교육, 간부 교육 등 교육사업과 영상·홍보물 게시, 유인물 부착 등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습니다.
- 차. “㉞ 교섭·쟁의사업비”란에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교섭·쟁의·집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쟁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 및 지원금 등을 적습니다.
- 카. “㉞ 기타사업비”란에는 사업비 중에서 ㉞부터 ㉞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적습니다.
- 타. “㉞ 상급단체 부과금”란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 등에 납부한 부과금 등을 적고, 산하조직은 단위노동조합 등에 납부한 부과금 등을 적습니다.
- 파. “㉞ 하부조직 교부금”란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산하조직 등에 배분한 교부금 등을 적고, 연합단체는 단위노동조합 등에 배분한 교부금 등을 적습니다.
- 하. “㉞ 타회계 전출금”란에는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간의 전출로 발생한 지출 금액을 적으며, “3.수입현황”의 “㉙ 타회계 전입금”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거. “㉞ 기타 지출”란에는 ㉞부터 ㉞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을 적습니다.
- 너. “㉞ 차년도 이월금”란에는 “17 수입총계”에서 “㉞ 당기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